

개인정보 내부관리 계획 신·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1조 목적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, 제30조 및 제30조2에 따라 공단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	제1조 목적 - 최신 법령 적용 양천구시설관리공단 개인정보 내부 관리계획은 「개인정보 보호법」 제2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제2항, 제30조 및 제30조2, 「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기준」(개인정보보호위원회 고시 제2025-9호)에 따라 공단에서 개인정보처리자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·도난·유출·위조·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·관리적 및 물리적 안전조치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.
제2조 용어 정의 ①. ~ ③. (생략) <신설> <신설> ⑥. ~ ⑫. (생략) <신설> <신설> ⑭. “비밀번호”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식별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.	제2조 용어 정의 - 정의 신설 ①. ~ ③. (현행과 같음) ④ “추가정보”란 개인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체하는 데 이용된 수단이나 방식(알고리즘 등), 가명정보와의 비교·대조 등을 통해 삭제 또는 대체된 개인정보 부분을 복원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. ⑤ “익명정보”란 시간·비용·기술 등을 합리적으로 고려할 때 다른 정보를 사용하여도 더 이상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정보를 말한다. ⑥. ~ ⑫. (현행과 같음) ⑬ “가명정보처리자”란 업무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가명처리하여 활용 또는 제공하는 공공기관, 법인, 단체 및 개인 등을 말한다. ⑭ “가명정보취급자”란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가명정보처리자의 지휘·감독을 받아 가명정보를 처리하는 업무담당자를 말한다. ⑮. ~ ⑰. (현행과 같음) ⑱. “비밀번호”란 정보주체 및 개인정보취급자 등이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또는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할 때 식별자와 함께 입력하여 정당한 접속 권한을 가진 자라는 것을 인증할 수 있도록 시스템에 전달해야 하는 고유의 문자열로서 타인에게 공개되지 않는 정보를 말한다. ⑲. ~ ⑳. (현행과 같음)

현행	개정안
㉘. “영상정보처리기기”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(CCTV)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. <신 설>	㉚. “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”란 일정한 공간에 설치되어 지속적 또는 주기적으로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1항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 (CCTV) 및 네트워크 카메라를 말한다. ㉛ “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”란 사람이 신체에 착용 또는 휴대하거나 이동 가능한 물체에 부착 또는 거치(据置)하여 사람 또는 사물의 영상 등을 촬영하거나 이를 유·무선망을 통하여 전송하는 장치로서 영 제3조제2항에 따른 착용형, 휴대형, 부착·거치형 장치를 말한다.
	㉜. ~ ㉝.(현행과 같음)
제3조 적용 범위 ① 본 계획은 … 공개된 장소에 설치·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…	제3조 적용 범위 -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관련 개인영상정보도 적용 대상 명시 ① 본 계획은 … 공개된 장소에 설치·운영하는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업무 목적으로 운영하는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통하여 처리되는 개인 영상정보에 대해서도 적용되며 …
제11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지정 및 업무 ③ 분야별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 6.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수립·시행	제11조 개인정보 분야별 책임자 지정 및 업무 - 이동형 추가 ③ 분야별 책임자는 아래와 같은 업무를 수행한다. 6.고정형·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 수립·시행
제16조 접근 권한 관리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업무담당자에 따라 차등 부여 하여야 한다.	제16조 접근 권한 관리 - 최신 법령 적용 ①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업무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로 차등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접근 권한은 개인정보취급자뿐만 아니라 업무 수행을 위하여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근하는 자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.
<신 설>	제24조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구성·운영 - 최신 법령 적용 ① 개인정보 보호 업무의 원활하고 체계적인 수행에 필요한 정책 결정 및 지원, 점검 등을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, 분야별 책임자 등으로 구성된 협의회(기관협의회, 시스템협의회 등)를 구성하여 운영한다. 1. 개인정보보호협의회는 ‘정보보안 실무협의회’와 함께 운영할 수 있다. ② 개인정보보호협의회 기능 1. 내부 관리계획 등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정책 수립 및 개선에 관한

현행	개정안
	사항 2. 개인정보의 수집·이용 및 안전성 확보조치에 관한 사항 3. 애로사항, 우수사례 공유 및 발전방향에 관한 사항 4.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하여 위원장 또는 위원 과반수가 요청한 사항
제33조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① 누구든지 공개된 장소에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되어야 하나 다른 법익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의 같이 예외적으로 설치·운영을 허용할 수 있다. ... ②. ~ ⑫.. (생략)	제34조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 및 운영 - 고정형·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향 분리 및 이동형 조향 신설 ①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5조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며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설치·운영할 수 없다. ② 공개된 장소에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려는 경우 행정 예고, 설명회, 설문조사 등을 통해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. ③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도입시 「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보안기능확인서 또는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(TTA)의 공공기관용 보안 성능품질 인증 등 일정한 보안성능이 확인된 제품 도입하여야 하며, 구축 시 “보안성 검토”를 수행하여야 한다. ④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「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」을 수립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※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가능 ⑤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정보주체가 쉽게 알아 볼 수 있도록 법 제25조제4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안내판을 설치하여야 한다. ※ 영 제24조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안내판 설치를 갈음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가능
<신설>	제36조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 - 고정형·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조향 분리 및 이동형 조향 신설

현행	개정안
	① 업무를 목적으로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공개된 장소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 법 제25조의2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가하며,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내부를 볼 수 있도록 촬영 할 수 없다. ②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·운영하는 경우 영 제25조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「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 방침」을 수립하고,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에게 공개하여야 한다. ※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 운영·관리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에 포함하여 공개 가능 ③ 이동형 영상정보처리기기로 사람 또는 그 사람과 관련된 사물의 영상을 촬영하는 경우 불빛, 소리, 안내판, 안내서면, 안내방송 등의 방법으로 정보주체가 촬영 사실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표시하고 알려야 한다. ※ 드론을 이용한 항공촬영 등 정보주체에게 촬영 사실을 알리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호위원회가 구축·운영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공지하는 방법으로 알릴 수 있음